

예산총칙

201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042,521,806	121,275,654
일반회계	3,326,687,618	99,800,629
특별회계	715,834,188	21,475,026
공기업특별회계	293,834,948	8,815,048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93,834,948	8,815,048
기타특별회계	421,999,240	12,659,977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27,888,950	836,669
소방특별회계	147,736,192	4,432,08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10,852,683	6,325,580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12,691,415	380,742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8,290,000	548,7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540,000	136,2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325,63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6,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